
실시계획인가고시 당시 영덕군수와 여성가족부장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?

1 질의

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고시 당시 영덕군수와 여성가족부장관이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수용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어디인지?

2 회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1조를 보면,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·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시·도에 걸쳐있는 사업을 관할 하도록 되어 있고,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외의 사업에 대한 재결사항을 관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질의하신 군계획시설 (청소년수련시설)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국가와 지자체 공동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수용재결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판단됩니다.

[2011.12.2. 토지정책과-5732]